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건강기능식품 개념, 기능성 범위 및 표시 광고 합리화에 대한 연구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건강기능식품팀/ 곽노성
부서/과제담당관	건강기능식품팀	담당공무원	김병태
연구방식	용역		
연구자 선정방식	일반경쟁입찰		
연구기간	2007.02.23-2007.11.30		
연구결과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 등과의 관계 분석. 국내외 기능성 및 유용성 표시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주요국의 건강기능식품 정의, 기능성범위·표시광고의 제도 분석.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되는 제형 범위에 대한 조정방안 제시. 건강기능식품의 사용용도에 따른 기능성 범위 설정(안) 제시.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지는 식품에 대한 광고지침(안) 마련		
평가결과	<p>[연구수행에 있어 잘된점]</p> <p>해외표시연구등에 대한 연구는 성실함. 본 연구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기능성 범위 및 표시 광고 합리화에 대한 연구로 연구계획서 대로 충실히 수행 된 것으로 파악됨. 연구수행으로 충실히 수행 했으나 자료수집분석에 비해 방향제시가 다소 포괄적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예정목표를 달성하였음.</p> <p>[연구수행에 있어 보완점]</p> <p>합리성, 타당성의 여부에 대한 연구가 미흡. 전문가, 토론등 대외적인 정보수집이 미흡. 제도의 큰 변화이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본 연구과제는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서 수행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기능성의 범위 및 표시광고 합리화에 대하여 모든 내용을 담아 실질적으로 산업체 및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조사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사료됨.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방안 개발요망. 제외국 자료와 국내법 간의 차이 점등을 면밀히 검토.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요구됨. 일반식품 형태에 대한 표시허용범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흐름에 맞춰 정책을 수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p> <p>[연구결과의 활용방안]</p> <p>향후 식품정책의 근간을 변경할 때 활용가능.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안을 정책에 수렴하면 활용 가능. 건기법 전면 개정이라는 포괄적인 제시가 있어 재검토 후 타당성이 있다면 법령 개정 연구가 요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 되어야함. 건기식법 전면 개정안 제시를 위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함. FUNCTIONAL FOOD의 성장과 개발방향을 결정지을수 있는 중요한 연구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일반식품의 기능성에 관한 표시 광고 규제방안 수립에 과학적 접근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국외 벤치마킹 외에)</p> <p>[연구성과의 파급효과]</p> <p>이 연구결과에 의한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파급효과 등. 기능성 식품의 제도 재정립에 큰 영향을 발휘할 것 같음. 본 결과를 제도개선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및 기능성등에 잘 표시되면,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일수 있음.</p>		
평가자	구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명	노정혜/박표잠/왕수경/정강현/정미숙/ 홍경희/구용의/장영수	